

부서명 : 보건환경처

담당	처장
이호영	조진환

보안 교육일지

교육구분	전파교육	교육일시	2017-10-31 (1시간)		
교육인원	구분	계	남	여	전파교육자 명단
	교육대상 인원수	19	12	7	
	교육실시 인원수	19	12	7	
교육내용	○ 전자우편 보안강화 및 대응방법 - 개요 - 전자우편 보안강화 및 대응방법 - 정보보안업무처리규정 제28조(전자우편 보안대책) - 상용메일을 통해 업무자료를 송·수신할 수 없으며, 공사 전자우편으로 송·수신한 업무자료는 활용 후 메일함에서 즉시 삭제 - 공사 전자우편에서 업무편의 등을 위해 중요 업무자료를 본인 또는 동료직원의 상용메일로 발송하는 행위 금지				
교육실시자 및 장소	성명	직명	교육장소	비고	
	조진환	처장	회의실		

보안교육 참석자 명단

No	직명	성명	서명	No	직명	성명	서명	No	직명	성명	서명
1	처장	조진환		2	팀장	최영도		3	팀장	정범채	
4	부장	이기준		5	부장	황정윤		6	부장	정재황	
7	부장	최정해		8	차장	서기주		9	차장	윤신애	
10	차장	하근석		11	과장	나은화		12	과장	김은희	
13	대리	박진호		14	대리	김준현		15	대리	조희	
16	대리	김근민		17	대리	강서영		18	주임	노산나	
19	주임	이호영		20				21			

< 붙임 >

전자우편 보안강화 및 대응방법

※ 아래 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요망

1. 개 요

- 최근 국가·공공기관 재직자의 상용메일 계정정보가 탈취되어 중요 업무자료가 유출되는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 요망
 - 공격자는 기관메일 보안강화로 해킹이 어렵자 상용메일을 대상으로 피싱메일 등을 발송(관리자 사칭), ID·비밀번호를 탈취
 - 상용메일로 업무자료 송수신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상용메일 해킹으로 상당량의 중요 업무자료가 유출되고 있는 실정
- 이에, 쏘직원 대상 △해킹 의심메일 대응요령 △상용메일 사용금지 △개인목적 상용메일 사용시 보안강화 등 긴급전파 필요

2. 전자우편 보안강화 및 대응방법

- 상용메일을 통해 업무자료를 송·수신할 수 없으며, 공사 전자우편으로 송·수신한 업무자료는 활용 후 메일함에서 즉시 삭제

*** 정보보안업무처리규정 제28조(전자우편 보안대책)**

② 사용자는 상용 전자우편을 이용한 업무자료 송·수신을 금지하며 공사 전자우편으로 송·수신한 업무자료는 열람 등 활용 후 메일함에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공사 전자우편에서 업무편의 등을 위해 중요 업무자료를 본인 또는 동료직원의 상용메일로 발송하는 행위 금지

* 민원인 대상의 불가피한 업무에 한정, 민원인 상용메일 대상 자료전송 가능

- 전자우편은 일반 업무자료만 소통할 수 있으며 대외비 이상 비밀문건 소통은 불가하며 필요시 비밀관리시스템 활용 등 비밀소통체계 준용
- 개인목적의 상용메일 패스워드와 공사 전자우편 패스워드를 다르게 설정, 상용메일 해킹이 공사 전자우편으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
- 공사 전자우편을 상용메일로 자동 포워딩하거나 상용메일에서 공사 전자우편을 불러 올 수 없도록 보안조치
 - * 공사 전자우편 서버에서 POP3·IMAP 등의 기능을 제거하거나 방화벽에서 해당 포트 차단
- 수신메일內 첨부파일이 자동 실행되지 않도록 설정하고 첨부파일 다운로드시 반드시 최신 백신으로 악성코드 은닉여부 검사
- 명함 또는 전자우편 서명內 ‘상용메일 주소’ 표기 금지
- 분기 1회 이상 숫자·문자·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의 비밀번호를 설정·변경하며,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출 것
 - 사용자 ID와 동일하지 않은 것
 - 개인 신상 및 부서명칭 등과 관계가 없는 것
 - 일반 사전에 등록된 단어는 사용을 피할 것
 - 동일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 것
 -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 것
 - 동일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지 말 것
 - 자동 비밀번호 입력기능은 사용하지 말 것
- * (좋은예) asdf\$#0erea, @^a36ghdrlfefd (나쁜예) tiger12345, 00computer00

- 知人 사칭 해킹메일 유포에 대비하여 첨부파일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발송자에게 유선 확인 후 열람토록 하며, 해킹메일 의심시 정보보안 담당관에게 신속 신고
 - 해킹메일을 지속적으로 수신하거나 비밀번호가 유출되었을 경우 사용중인 이메일 계정 변경 권고
 - 공사 보안담당자는 해킹메일 유포 등 사이버공격에 대한 피해 확산방지 요청 접수시, 해킹메일 유입차단 등 신속 보안조치
- ※ 기타 전자우편 보안관리에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6·27·35조 및 「정보보안업무처리규정」 제20·28조에 명시된 보안조치 사항 준수. 끝.